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산업통상자원부(2022. 12. 7.)



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높게 부과되고 있고,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다.

- 개정 이유
 - 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,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에 차이를 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.

■ 주요 내용 : 가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 개선(안 [별표 14])

❖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신규조문대비표(일부내용 발췌)

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
[별표 14] 수수료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수수료</th></tr><tr><td>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</td><td>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-중 략- 다.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: 25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: 60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</td></tr><tr><td></td><td>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-중 략- 1) 국내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20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20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48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48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〈이하 생략〉</td></tr></table>	구분	수수료	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-중 략- 다.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: 25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: 60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	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-중 략- 1) 국내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20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20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48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48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〈이하 생략〉		[별표 14] 수수료 부과기준(제48조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수수료</th></tr><tr><td>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</td><td>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-중 략- 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</td></tr><tr><td></td><td>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-중 략- 1) 모델수 5개 이하: 15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2) 모델수 6개 이상: 15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〈이하 생략〉</td></tr></table>	구분	수수료	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-중 략- 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	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-중 략- 1) 모델수 5개 이하: 15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2) 모델수 6개 이상: 15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〈이하 생략〉	
구분	수수료																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-중 략- 다.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) 국내 공장심사: 25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: 600,000원(공장심사비)+출장비																
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-중 략- 1) 국내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20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20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 2) 국외 공장심사 가) 모델수 5개 이하: 48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나) 모델수 6개 이상: 48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															
〈이하 생략〉																	
구분	수수료																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-중 략- 다. 공장심사 비용(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공장 한 곳당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	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. 다만,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. -중 략- 1) 모델수 5개 이하: 150,000원×품목수+출장비 2) 모델수 6개 이상: 150,000원×품목수+(품목별 인증모델수-5)×20,000원+출장비																
〈이하 생략〉																	